「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」

일부개정 2024. 4. 23. 규정 제909호

1. 개정이유

○ 학칙 개정으로 ‘인권센터’를 학내 부속시설로 신설하고, 신축도서관에 대학 인권센터 독립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규정을 개정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부속시설 인재개발원 업무 중 인권 관련 업무를 삭제(안 제2조제4호, 제3조제5항)

○ 인재개발센터를 취ㆍ창업센터로, 심리ㆍ인권지원센터를 학생상담센터로 명칭 변경(안 제3조제3항, 제4항, 제5항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붙　　임 : 일부개정(안)

「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」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인재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인재개발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인재개발원”을 “인재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인재개발센터”를 “취·창업센터”로 하고, “심리·인권지원센터”를 “학생상담센터”로 한다.

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심리, 진로, 스포츠심리 관련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
2. 심리, 진로, 스포츠심리 상담 및 검사

제3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“인권”을 삭제한다.

부 칙(제909호, 2024. 4. 2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인재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----------인재개발원----------.
제2조(업무) 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·3. (생 략) 4. 인권보호 관련 업무 5. (생 략)	**제2조(업무)** 인재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----. 1.·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조직 구성 및 분장사무) ①·②(생 략) ③ 개발원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재개발센터와 심리·인권지원센터를 둔다. ④ 인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 1. ~ 9. (생 략) ⑤ 심리·인권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 1. 심리, 스포츠 심리, 인권보호·성희롱·성폭력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2. 심리·스포츠심리·인권침해 상담 3. 인권침해·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, 접수, 조사 및 구제 4. 인권침해, 4대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 관련 예방 교육 및 홍보 5. 인권조사위원회 운영 6. (생 략) 7. 그 밖에 심리·인권 지원 관련 업무	**제3조(조직 구성 및 분장사무)**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취·창업센터와 학생상담센터----------. ④ 취·창업센터-----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⑤ 학생상담센터----------. 1. 심리, 진로, 스포츠심리 관련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2. 심리, 진로, 스포츠심리 상담 및 검사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-- 심리 ----------
	부 칙(제909호, 2024. 4. 23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